

부천시세정업무조사결과보고서

의안번호	377
의 결 년 월 일	95. 3. 28 (제36회)

제출년월일 : 95. 3. 27

제 출 자 : 부천시의회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장

☐ 목 적

-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부천시산하 각 구청의 세무비리사안에 대한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토록 함으로써 세금횡령 환수조치방안 및 사안재발의 원천적 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함.

☐ 추진방침

- 세무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 횡령세금 환수조치 강구
- 세무비리 재발 원천방지방안 조사
- 세정업무추진 개선방안 조사

☐ 조사기간

- 94. 12. 14 ~ 95. 2. 28

☐ 조사의 범위

- 세금횡령사건의 경위 및 진상
- 세금횡령사건 비위관련자 조치실태
- 세금횡령관련자별 재산압류 실태
- 세금횡령사건과 관련한 세정업무 추진실태
- 비리관련자 은닉재산 조사실태

가. 일정별 활동상황

일 자	위 원 회 활 동	내 용	비 고
94. 11. 29 (10:00~)	○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사정상 정기회 종 료 후 시행토록 함	
94. 12. 7 (10:00~)	○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	○ 세정업무조사계획(안) 심사 ○ 내실있는 특위운영을 위하여 향후조사	
94. 12. 27 (10:00~)	○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 부천시 세정비리사건 진상 및 환수조치 상 황보고 ○ 감사지적사항 보고	
95. 1. 13 (11:00~)	○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재선임 ○ 조사일정 토의 ○ 조사반 편성	

나. 조사활동

일 시	대 상 기 관	조 사 내 용
94. 12. 27	○ 부 천 시 청	○ 세정비리사건 진상 및 조치 상황보고에 따 른 사안별 질의 및 조사
95. 1. 16~1. 17	○ 소 사 구 청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조사실시
1. 18~1. 19	○ 원 미 구 청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조사실시
2. 7 ~ 2. 8	○ 오 정 구 청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조사실시
2. 9	○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조사실시

□ 주요조사내용

가. 사건발생 경위

- 94. 9. 26일부터 11. 22일 동안 감사원 제3국 1과에서 부천시산하 3개 구청의 세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 534건 23억 500만원, 부족징수 및 부과누락 73건 2억 8천 700만원, 기타 14건 2300만원 등의 세정비리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원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것임.

나. 횡령유형

- 취득세 및 등록세 업무와 관련한 세무과 담당공무원이 법무사 직원과 결탁하여 허위영수증 및 영수필통지서 발급 후 세금횡령
- 자진납부 및 납기가 경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세무과로 가져오면 담당공무원이 가짜 수납인을 이용하여 허위영수증 발급 후 납부대장에 허위기재 후 세금횡령
- 세무과 담당직원 간에 담합으로 영수증 허위작성으로 납부대장에 허위기재 후 세금을 횡령하여 분배착복

다. 세목별 횡령금액

(금액: 천원)

세 목 별	건 수	횡 령 액	비 고
계	534	2,305,862	
취 득 세	30	119,581	
등 록 세	504	2,186,281	

라. 구속자 총괄내역

구 속 사 유 별	공 무 원	민 간 인
계	38	5
세 금 횡 령 사 건	12	3
문 서 변 조 사 건	7	
뇌 물 관 련	8	
기 타 관 련	5	2
불 구 속	6	

※ 지명수배자 : 공무원(3), 법무사직원(2)

마. 횡령관련 구속자(공무원 12명, 민간인 3명)

소 속	직 급	성 명	구속일자	구 속 사 유	비 고
교 통 행 정 과	6급	구 철 서	94.11.24	○ 원미구 세무1계장 재직시 취득세, 등록세 34,000천원 횡령 혐의	

소 속	직 급	성 명	구속일자	구 속 사 유	비 고
오 정 구 세 무 과	7급	김 종 호	94. 11. 24	○ 원미, 오정구 세무과 근무시 취득세, 등록세 60,000천원 횡령협의	
원 미 구 세 무 과	기능직	이 병 훈	94. 11. 27	○ 원미구 세무과 근무시 취득세, 등록세 378,151천원 횡령협의	
세 무 조 사 과	7급	김 철 승	94. 11. 28	○ 소사구 세무과 근무시 등록세 9,000천 원 횡령협의	94. 11. 26 횡령액 반납
전 원 미 구 세 무 과	기능직	홍 석 표	94. 12. 1	○ 원미구 세무과 근무시 등록세, 취득세 1억 8천만원 횡령협의	
세 정 과	기능직	박 정 환	94. 12. 8	○ 취득세, 등록세 378,151천원 횡령협의	
소 사 구 세 무 과	기능직	임 동 규	94. 12. 8	○ 취득세, 등록세 110,380천원 횡령협의	
원 미 구 세 무 과	일용직	이 칠 문	94. 12. 1	○ 법무사 직원 황희경과 공모하여 세금 1억 2천만원 횡령협의	
소 사 구 경 위 생 과	별정 8급	한 광 열	94. 12. 9	○ 소사구 세무과 일용직 근무시 취득세, 등록세, 4700만원 횡령협의	
광 명 시	별정 8급	장 정 규	94. 12. 9	○ 원미구 세무과 일용직 근무시 취득세, 등록세 1800만원 횡령협의	
오 정 구 사 회 복 지 과	9급	김 길 성	94. 11. 28	○ 원미구 세무과 근무시 취득세, 등록세 340,000천원 횡령협의	
원 미 구 세 무 과	기능직	양 재 언	95. 2. 5	○ 세무과 근무시 취득세, 등록세 86,205 천원 횡령협의	
손 영 석 법 무 사	사무장	송 동 섭	94. 12. 12	○ 공무원과 공모하여 등록세 74,380천원 횡령협의	
손 영 석 법 무 사	직 원	황 진 영	94. 12. 2	○ 공무원과 공모하여 등록세 74,380천원 횡령협의	
노 남 규 법 무 사	직 원	한 상 설	94. 11. 24	○ 공무원과 공모하여 등록세 14,942천원 횡령협의	

바. 세금 횡령자에 대한 채권확보 현황

- 세금 횡령액 : 2,305(백만원)
- 총재산 평가액 : 21명 4,027(백만원)
 - 공무원 : 11명 1,939(백만원)
 - 법무사 및 직원 : 8명 2,059(백만원)
 - 기 타 : 2명 4,027(백만원)
- 가압류촉탁필 : 40건 4,027(백만원)
 - 아파트 : 15동
 - 토 지 : 16필지
 - 주택 및 대지 : 6건
 - 채 권 : 3건(전세금 2, 아파트 계약금 1)
- 채권 보전가능액 : 3,141백만원
- 법원 결정 : 32건 3,440백만원

※ 재산 미보유자 : 김길성(9급 구속중), 김홍식(기능직, 수배중)

사. 관련공무원 문책현황

(94. 12월 현재)

계	직위해제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징계 요구중	비 고
28	13	8			7		

□ 문제점

(비리 방지틀 위한 인사행정)

- 우리 80만 부천시민을 경악의 분노 속에 몰아넣은 부천시 사상 초유의 이러한 대형 세금 횡령사건의 발생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세무부서가 이권부서라는 공공연한 하극상의 여론이 장기간에 걸쳐 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비리 관련자들이 세무부서에 10년 이상 장기 근무토록 하였으며, 심지어 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비리사건 발생 구속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등 투명된 인사행정을 위한 순환보직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므로써 오늘의 이 사태를 낳고야 말았으며
- 또한 이러한 비리사태를 자초케된 인사비리로 인하여 부천시 전 행정조직을 위기에 몰아넣고야만 대형 구속사태 역시 그동안의 밀실인사로 인한 인사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감이

쌓이고 쌓이다 터지고야만 상하복지부동의 전형적 단면성을 보여준 사례이므로

- 향후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 대한 원천적 방지책은 한계성이 있는 통제와 지도감독보다는 부천시 지방행정 업무수행의 주체인 선량한 공직자상의 육성이 시급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공직자 개개인이 시민적 양심에 기인한 사명감을 지니고 성실히 근무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일신되어 행정조직 구성원 누구나가 인정하는 신상필벌의 인사풍토 조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비리 방지책 위한 감사)

- 그동안 수시로 실시하여온 감사원, 내부부, 도청, 시자체감사는 이러한 대형 비리사태의 원천적 사전방지를 위한 통제적 기능이 상실된 채로 그저 연례적으로 실시되어온 듯한 느낌으로 사태발생 이후 이에 대한 해명에만 급급한 실태로서 효율적인 감사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감사방침은 감사실시 이후 비리사태 발생시에는 감사자를 엄중히 문책토록 하여 사정기능을 확립토록 하여야 할 것임

(횡령 규모에 대한 재조사)

- 현재까지 밝혀진 부천시 세금횡령사안에 따른 그 규모는 감사원, 검찰수사에서만 밝혀진 내역으로서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한 환수대책위원회를 구성 후 그 사안을 진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히며 행정불신 여론을 해소하고자 각종 행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었으나
- 그 행정조치의 주요내용은 대시민 사과 및 해명조치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확인요구 시 이를 확인하여 주는 정도의 행정조치로서 현재까지 적발된 횡령세액 이외의 횡령의혹에 대한 여론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확인감사가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의혹이 더욱 증가되어 가고있는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실천되어야 할 것임

(횡령세액 손실에 따른 환수)

- 금번 세금횡령사건으로 인한 지방세 총 손실액은 23억 5백만원이며 이를 환수키 위한 세금횡령 관련자들의 재산 가압류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40억 2700만원으로서 현재 구속자 중 김길성과 수배 중인 김홍식을 제외한 비리 관련자들의 횡령세액 환수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는 있으나

- 현재까지도 비위 관련자의 개인별 횡령액수가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향후 횡령액이 개인별로 규명될 시 이에 따른 손실세액 환수에 따른 비위 관련자의 재산 과·소에 의한 손실세액 환수에는 다소 차질이 발생될 것이므로 손실세액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횡령 세액에 의한 손실액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한계성)

- 부천시에서는 횡령사건 발생 이후 세무비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 현금취급 금지, 세액징수에 따른 일일결산 검증실시, 세무부서 인력보강 및 순환보직, 세정 전과정 전산화, 부과 및 징수업무 분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각종 개선책이 황급히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었으나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실태로서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실시된 금번 조사 시 일선기관에서 수집된 세정업무와 관련한 각종 개선요망 사항은 거의가 관련법의 개정 및 일선기관의 업무수행 시 현실성이 참고되지 아니한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업무지침에 가로막혀 있었으므로 현 실태를 참고한 자율적인 세정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태이며
- 관련법규 개정 및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단일화, 취득세 중과세 전면개선, 지방세 부과권의 추정기간 연장, 소득할주민세 과세자료 신속통보 및 등기소 등 부과징수에 따른 유관기관에 대한 의무규정
- 세정업무 비리사안의 방지 및 효율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내부부 지침에 의한 세정업무 전산화 계획의 문제점 및 전산인력의 과부족 실태 등으로
- 지방화시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있는 지방행정업무 시행은 사실상 많은 장애가 현존하고 있는 실태로서 지방자치 행정의 한계성에 부딪쳐 있는 것이 현실정임.

□ 개선요망사항

(취득세, 등록세 분야)

○ 현실태

- 현 전산체제로는 OCR고지서 출력지연으로 민원불편
- 정액세의 경우 일반 등록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므로 불필요한 항목을 거쳐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하여 처리시간 과다소요

- 기존 과세자료를 이용치 못하고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자료를 입력하는데 따른 업무 비능률 초래

○ 개선방안

- 보조전산프로그램의 자체개발로 업무의 신속처리
- 전산담당 공무원의 확충과 P.C 추가설치

(자동차등록세 분야)

○ 현실태

- 자동차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196조 2항에 의거 등록원부에 의한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량소유주의 빈번한 전·출입, 비과세차량(장애인)소유주의 차량 매도에 따른 과세 기준 변동 등이 현재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임

○ 개선방안

- 동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세무과와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분야)

○ 현실태

-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는 부천시 주민세액의 13%에 불과하나 주민세 체납액의 80%에 이르는 만성적인 체납분야임
-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통상 소유권이전 1~4년 경과 후 부과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는 소득세 부과 후 1년 이상 지연 통보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주민세 과세는 부과시 납세자 현주소지 파악에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지방세법 제179조의 4규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통보의무가 준수되고 있지 아니한 실태인 바,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업무감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 행정쇄신 차원의 기관 간 전산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행정쇄신위원회 전의대상)

(종합토지세 분야)

○ 현실태

- 부동산 취득시 주소와 부과시 주소가 상이하여 고지서 송달불능 및 종토세 부과기준일(6

월)과 납부시기(10월)와의 4개월 동안의 부동산 매각 등으로 체납세 다수 발생

○ 개선방안

- 주소 이전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변경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법 제정
(행정쇄신위원회 건의대상)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국고귀속 개선)

○ 현실태

- 지방재정법 제28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의 귀속과 비송사건절차법 제48조의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제250조의 약식재판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 중 이의신청건의 과태료가 국고귀속
- 민사소송법 제523조의 과태료의 집행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 징수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금을 지체없이 결정함으로써
- 지방재정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523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조치되므로 지방세외수입이 감소

○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는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고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여 귀속조치
- 이의신청에 의하여 감액된 과태료에 대하여서는 국비교부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손실보상 차원의 교부가 요망됨

□ 조사시 주요질의 및 답변

조 사 내 용	답 변	시 정 요 구 사 항	비 고
○ 지방세 평령에 따른 손실세액은 기 수립된 환수계획에 의하여 환 수가능여부?	○ 지방세 평령에 따른 손실액은 23 억 5백만원으로서 이와 관련한 비 리자들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존 가능액은 31억 4천 1백만원으로 ○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가압류촉탁 을 의뢰하여 조치된 상태이므로 환수가 가능함	○ 일반 시민에게는 이러한 지방세 평령액의 환수계획에 의한 손실환 수 가능여부 홍보가 미비한 상태 이므로 현재 홍보중인 내용에 본 계획을 홍보하기 바람	
○ 지방세 평령과 관련한 36명의 비 리 공무원의 평령액수가 차이가 날 것이므로 환수액이 달라질 것 임 ○ 즉, 평령액에 비하여 비리 관련자 의 재산이 적거나 많을 경우 환수 에 문제가 발생될 것인데 이에 대 한 대책은?	○ 현재까지 개인별 평령액수가 정확 히 규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 므로 이에 대한 사실규명 즉시 환 수토록 하겠으며 ○ 현재로서는 비리자뿐만 아니라 친인 척에 대한 재산내역을 전국 전산 망을 통하여 최대한의 채권확보 조치하고 있는 상태임	○ 비리관련자의 세액평령 환수는 관 련자의 개인별 재산유무를 불구하 고 책임지고 환수 조치토록 하기 바람	
○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한 시지체 감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바람	○ 현재 자동차 등록, 취득세 8,000전 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인데 검찰 수사자로 요구로 인하여 감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현재까지 이상 유무는 32전임	○ 자동차 등록, 취득세에 대한 자체 감사시 이상이 발견된 32건의 내 역을 제출하기 바람	

조 사 내 용	답 변	시 정 요 구 사 항	비 고
○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산출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징수액보다 낮게 잡아 징수 후 엄청난 실적으로 하는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바람 ○ 또한 이러한 실태로 인하여 이러한 세금형평이 발생하여도 파악이 아니된 실태임	○ 당초 세입목표액은 산출기초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며 추정시 수시 목표액이 조정되므로 허황된 산출액이 아님	○ 지방세 징수목표액 산출근거를 91년~94년까지 제출하기 바람	
○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와 관련하여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사안이 전산 누락으로 인하여 세입이 누락되는 상태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주민등록번호 누락, 상속 미신고 등으로 인한 내역은 계속하여 조사후 전산입력 조치하고 있음		
○ 청령세액과 관련한 영수필통지서가 일괄적으로 폐기된 사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발생한 사례로서 향후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		